

기술판사와 전문심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응병 서기관

2007.10.17.

2. 전문심리위원제도

(1) 의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소송법 개정예 따라 2007. 8. 14.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 행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심급의 제한 없이 1심, 2심, 3심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건축, 의료 등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의 예시일 뿐이며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전문심리위원에게는 국가의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송달료 외에는 증가되지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에 대한 조연자의 역할을 하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심리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2) 제도 도입의 경과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07. 6. 20.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2007. 7. 13.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개월을 경과한 날인 2007. 8. 14.부터 시행됨으로써,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 이 제도는 이상민 의원 등 15인이 2006. 11. 3. 제안을 하였는데, 철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일본에서 이미 2004. 4. 1.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를 참조하여 도입하였음.

(3) 위원들의 지위와 역할

전문심리위원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재판부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그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참여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참여하는 사건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설명 등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설명 등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어느 한 가지 방식이나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음.

3. 기존 전문가 제도와의 차이

전문심리위원제도가 기존의 유사제도들과 차이는 무엇인가? 기술판사는 없지만 이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유용한지를 살펴보자.

(1) 감정인과 차이

감 정 인	전문심리위원
감정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설명 등 요구사항을 감정사항과 같이 명확히 확정할 필요 없음
선서의무 부여	선서 절차 없음
감정에 장기간 소요	신속한 도움 가능
증거자료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음
감정비용 당사자 부담	수당 등 여비 국가 부담

(2) 기술심리관과 차이

기술심리관제도는 그 성격상 일본의 기술조사관제도와 독일의 기술판사제도와 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운용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특허법원에서만 운용하고 있고 지방법원 또는 타 고등법원에는 없고 다만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법원조사관형태로 소수의 인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심리관	전문심리위원
법원공무원 또는 파견공무원	공무원 아님. 다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진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계 소송에 한정(상표 관련 소송 제외)	모든 소송사건에 가능

* 법원내부자료를 일부 발췌한 것임.

4.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용에 대한 의문점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2007. 8. 14.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실무상 활용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미지수인 상태이고, 다만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그 필요성이 클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처음 시행되는 위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 소송절차

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를 담당하는 재판장이 위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취지와 운영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한 다음 이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문위원의 자격이나 그 인원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된다. 일단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기존에 있는 기술심리관제도나 법원조사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보다도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여러 면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이지만, 좁은 나라에서 배타적인 법조계 분야에서 전문지식(기술)과 법을 균형있게 이끌어 갈수 있는 판사들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기대된다. END.